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5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어기구 · 정춘생 · 손명수
임호선 · 주철현 · 박균택
김태선 · 허성무 · 김주영
김의겸 · 김병주 · 조인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봉산업은 과수 · 채소 · 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 꿀벌 질병 및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봉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기반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 2만 명 이상의 양봉인이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정기념일이 부재하여 관련 산업의 위상 제고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양봉인의 날) ①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양봉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봉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양봉인의 날) ①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양봉인”이라 한다)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봉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